#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7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 권칠승·김교흥·김태년

김태선 · 송옥주 · 한민수

임호선 · 김동아 · 소병훈

정일영 · 위성곤 · 이건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허위제작물의 처벌을 규제하고 있으나, '유포 목적이 없을'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영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법률 제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를 "사람의"로, "5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1항의 영상물등에 대한 편집등을 하거나 제1항에"로, "한 자또는"을 "한 사람 또는"으로, "자는 5년"을 "사람은 7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을 "촬영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또는 허위영상물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등) ① <u>사람의</u>
<u>사람의</u> 얼굴·신체 또는 음성	
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	
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	
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	
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	
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u> 7년</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	② <u>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1</u>
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항의 영상물등에 대한 편집등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	<u>을 하거나 제1항에</u>
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u>한 자 또는</u> 제1항의	<u>한 사람 또는</u>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	
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u>자는 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u>역에 처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 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 ③ (생 략)

<u>사람은 7년</u>
③
<u>3년 이상의 유기</u>
<u> 징역에</u>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촬영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
물을 포함한다) 또는 허위영상
물을
② · ③ (현행과 같음)